

#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,  
그리고 선배, 동료 위원님 여러분!  
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자유한국당 김현기 의원입니다.  
「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 
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  
-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,  
효율적인 공공갈등의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시  
공공갈등관리 체계의 관련 근거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 
공공갈등 관리를 통해 시정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 
것입니다.
  
- 주요 내용은  
공공갈등 관리실태의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의무화  
하고, 공공갈등의 예방 및 관리, 공공갈등의 예방 및 관리,  
평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갈등 발생  
및 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 의무를 규정하며, 공공갈등의  
예방, 진단, 조정 및 교육훈련 등 갈등관리 업무의 원활한  
수행을 위한 자치구 협력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
○ 본 개정안은

갈등관리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통한 서울시와 자치구간  
갈등관리의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,  
효율적인 공공갈등 예방·조정 등 업무 추진을 위한 갈등관리  
체제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제안하였다는 점을 깊이  
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